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던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정규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기계 등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노무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역탐지 인력 3명(전문경력관 다군 3명), 동물복지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농산물 수출단지 검역관리에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제주공항 해외여행객 휴대품 X-ray 검사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고위험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제공인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개과를 정규화하여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10개월 연장하며,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한시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환경부와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 추진인력 1명(환경부 5급 1명), 축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업무 추진인력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1명) 및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추진인력 1명(농촌진흥청 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물대학에 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립종자원에 종자 유통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와·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팀·농업경영체과·농업정보”를 “운영지원과·기획조정과·소비안전과·품질검사와·원산지관리과·인증관리과·농업경영체과·농업정보”로, “과장 및 인증관리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관리팀장”을 “인증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1명)”을 “1명),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2명(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

로 충원해야 한다.

⑦ ASF 방역대책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6 중 총계 “608”을 “617”로 하고, 일반직 계 “604”를 “61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3”을 “107”로,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1”을 “102”로,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6”을 “38”로, 행정주사 “33”을 “34”로 하고, 전산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613”을 “622”로 하고, 일반직 계 “609”를 “618”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7”을 “111”로,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7”을 “98”로,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
업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6”을 “38”
로, 행정주사 “33”을 “34”로 하고, 전산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 · 수
의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10”을 각각 “1,124”로 하고, 수의주사보
“135”를 “137”으로 하고, 농업서기 “78”을 “86”으로 하며, 수의연구관 29
다음에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다군
(검역탐지조사요원) “24”를 “27”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10”을 각각 “1,124”로 하고, 수의주사보
“128”을 “130”으로 하고, 농업서기 “73”을 “81”로 하며,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4 다음에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며, 전문
경력관 다군(검역탐지조사요원) “24”를 “27”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78”을 각각 “1,481”로 하고,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4”를 “105”로 하며, 농업연구사 “16”을 “1
8”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78”을 각각 “1,481”로 하고,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14”를 “115”로 하며, 농업연구사 “15”를 “1
7”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121”을 “124”로 하고, 일반직 계 “51”을 “5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9”를 “51”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융합교육 정보화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7”을 각각 “22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16”을 “220”으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인증관리팀”을 “인증관리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관련)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3명 (5급1, 6급2)	2022년 9월 30일까지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물관리 과	4명 (4급1, 6급2, 7급1)	2023년 3월 3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 과	-	2023년 9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2023년 9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 과	-	2023년 9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 소 성분검정과	-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 18]

농림축산식품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8조 관련)

1. 제3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 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 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2. 제38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보건연구관	1
보건연구사	1

3. 제38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8조(한시정원)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0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②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명),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
는 1명(6급 1명)-----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한시정원) <삭 제>

② -----

----- 2023년 2월 28
일-----

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③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축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수의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⑤ 외래 병해충 예찰(豫察)·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

<삭 제>

<삭 제>

<삭 제>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1명(농촌지도관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2명(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⑦ ASF 방역대책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호 농림축
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인증관리팀은 2021년 9월 11
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9월 1
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2021년 9월 12
일 이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소비안전과장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1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
관의 정원 중 1명은 2021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9월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인증관리팀에 관하여 특별한

으로 충원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호 농림축
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

-- 인증관리과-----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21년 9월 12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농 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 되는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은 2022년 2월 22일까지 존속하고, 농촌재생에너지팀은 2021년 2월 2 8일까지 존속한다. ② ~ ③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생 략)	----- ----- -----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 2023년 2월 2 8일-----. ② ~ ③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 음)
--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
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획조정
과, 원산지관리과 및 시험연구
소의 성분검정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획조정과장, 원산지관리과장
및 성분검정과장이 분장하는 사
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획조
정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운영
지원과장이 분장하고, 원산지관
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품질
검사과장이 분장하며, 성분검정
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안전성
분석과장이 분장한다.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08</u>	<u>617</u>	+9
·	·	·	
·	·	·	
일반직 계	<u>604</u>	<u>613</u>	+9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 는 환경사무관	<u>103</u>	<u>107</u>	+4
·	·	·	
·	·	·	
행정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 는 식품위생사무관	<u>(신설)</u>	<u>1</u>	+1
·	·	·	

·	·	·	
행정주사	<u>33</u>	<u>34</u>	+1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 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 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 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 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 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101</u>	<u>102</u>	+1
·	·	·	
·	·	·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방송통 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 는 환경주사보	<u>36</u>	<u>38</u>	+2
·	·	·	
·	·	·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13</u>	<u>622</u>	+9
·	·	·	
·	·	·	
일반직 계	<u>609</u>	<u>618</u>	+9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 는 환경사무관	<u>107</u>	<u>111</u>	+4
·	·	·	
·	·	·	
행정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 는 식품위생사무관	<u>(신설)</u>	<u>1</u>	+1
·	·	·	
·	·	·	

행정주사	<u>33</u>	<u>34</u>	+1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 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 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 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 사 · 수의연구소 · 기록연 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97</u>	<u>98</u>	+1
·	·	·	
·	·	·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방송통 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 는 환경주사보	<u>36</u>	<u>38</u>	+2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10</u>	<u>1,124</u>	<u>+14</u>
일반직 계	<u>1,110</u>	<u>1,124</u>	<u>+14</u>
·	·	·	·
·	·	·	·
수의주사보	<u>135</u>	<u>137</u>	<u>+2</u>
·	·	·	·
농업서기	<u>78</u>	<u>86</u>	<u>+8</u>
·	·	·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신설</u>	<u>1</u>	<u>+1</u>
·	·	·	·
전문경력관 다군 (검역탐지조사요원)	<u>24</u>	<u>27</u>	<u>+3</u>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10</u>	<u>1,124</u>	<u>+14</u>
일반직 계	<u>1,110</u>	<u>1,124</u>	<u>+14</u>
·	·	·	·
·	·	·	·
수의주사보	<u>128</u>	<u>130</u>	<u>+2</u>
·	·	·	·
농업서기	<u>73</u>	<u>81</u>	<u>+8</u>
·	·	·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신설</u>	<u>1</u>	<u>+1</u>
·	·	·	·
전문경력관 다군	<u>24</u>	<u>27</u>	<u>+3</u>
(검역탐지조사요원)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478</u>		<u>1,481</u>	+3	
일반직 계			<u>1,478</u>		<u>1,481</u>	+3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u>104</u>		<u>105</u>	+1	
	.		.		.		
	.		.		.		
농업연구사			<u>16</u>		<u>18</u>	+2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1,478</u>		<u>1,481</u>	+3	
일반직	계		•		•		
			<u>1,478</u>		<u>1,481</u>	+3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u>114</u>		<u>115</u>	+1	
			•		•		
			•		•		
농업연구사			<u>15</u>		<u>17</u>	+2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21</u>	• <u>124</u>	+3
•	•	•	
•	•	•	
일반직 계	<u>51</u>	<u>54</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9</u>	<u>51</u>	+2
•	•	•	
<u>전문경력관 다군</u>			
(융합교육 정보화 담당)	<u><신 설></u>	<u>1</u>	+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17</u>	<u>221</u>	+4
일반직 계	<u>217</u>	<u>221</u>	+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16</u>	<u>220</u>	+4